‘기소유예’ 5·18 시민군·시민 23명 ‘죄 안됨’ 처분…42년만에 명예회복

특별재심 등 구제 절차 없어 광주지검·군검찰 등 명예회복 TF 구성
‘헌정질서 파괴 범행 반대 정당’ 사법부 일관된 판단 따라 처분 변경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거나 계엄령 반대 시위에 나섰다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23명이 42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검찰이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헌정질서파괴 범행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죄가 안됨’으로 당초 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5·18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유죄 확정판결 받은 이들과 달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과거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13일 5·18 관련 기소유예자 23명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기존 처분을 변경했다. ‘죄가 안됨’ 처분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을 깨뜨릴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하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당시 이들 대부분은 고교생, 회사원 등 10~20대 광주시민으로 옛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했거나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뒤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전남대 정문 앞 시위에 참여하고 시국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도 있다. 군검찰은 1980~1981년 이들을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전두환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상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자에 대한 재심에서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이기도 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달리 특별재심 등 당사자 구제 절차가 없다는 데 주목, 명예회복에 나섰다.

우선 광주지검은 지난 1월 광주시와 육군 31사단 군검찰, 5·18기념재단이 참여한 ‘5·18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를 구성했다. 광주시는 5·18 관련 보상자료 조사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자 발굴에 나섰고 5·18재단은 홈페이지 공고 및 5·18단체 홍보 등을 통해 당사자를 찾는 데 주력했다. TF 발족 이후, 군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23명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광주지검에 이송했고, 광주지검은 이를 검토 뒤 ‘죄가 안됨’으로 기존 처분을 변경했다.

광주지검은 또한 이날 ‘죄가 안됨’ 처분을 받은 23명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피의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하고, 피의자 보상 신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100명을 웃도는 것으로 5·18기념재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례도 있으나 명예회복 절차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자료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5·18과 관련해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12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에게 처분 변경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국민대회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렸다. 광주 시민사회·노동자 단체 관계자, 시민들은 국민대회에서 새정부를 향해 ‘5·18 발포명령자 등 진상규명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외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조사위 ‘송암동 사망자는 63년생 김종철씨’ 유족 “우리 종철이 아니다…조사위 발표 못 믿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12일 대국민 보고회 형식으로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가 5·18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1980년 5월 24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에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 ‘일부에선 다큐멘터리 사진 속의 김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63년생 김종철씨’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유족들은 “우리 종철이가 아니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고(故) 김종철씨의 친형 김종국(61)씨는 지난 14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종철이는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최후 항전 과정에서 숨졌다. 동생 나이도 62년생인데 63년생으로 발표한 5·18진상조사위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국씨는 이어 “종철이가 1980년 5월 25일 시내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시민군 차량을 몰던 것을 봤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남구 송암동 학살’ 과정에서 숨졌다는 조사위 발표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며 “국민에게 내놓는 자료를 유족 면담이나 통화도 없이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 목격자인 최진수씨 역시 “당시 공수부대원이 희생자 관자놀이에 총을 바짝 대고 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당시 숨진 이는 5·18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김종철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그분은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는데, 김종철씨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타박상’으로 기재돼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어떻게 설명할 셈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김종철씨 유족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날을 25일로 주장한 것은 잘못된 기억”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검안의에게 확인한 결과, 사체검안서에 적힌 후두부 훼손 흔적(4×5㎝ 크기)에 대해 ‘당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어 타박상으로 기재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종철씨 사체를 검안했던 문형배씨는 “5·18 조사위가 당시 사체 사진을 여러장 가져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여러가지를 묻길래 ‘당시 사체검안서는 보이는 대로 기재했을 뿐이다’고 밝힌 게 전부”라며 5·18조사위의 ‘부실 검증’을 비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선거 조기 과열…위법 선거운동 잇따라

전남도선관위, 예비후보 등 고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후보자들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잇따르는 등 조기 과열되고 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게 금전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 3명도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4월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 선거전략 수립·전화번호부 관리·선거운동 문자 발송·홍보물 기획 제작·콘텐츠 제작 등의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등록된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법정 수당 제공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금품 및 기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4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 참여를 독려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ARS 음성메시지 8만6500여 건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은 당내 경선의 경우 규정된 ‘선거사무소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정당 주도 경선후보자 홍보물 1회 발송,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의 선거운동이 아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추행 신고자를 되레 ‘해고’…전남대 산학협력단 2심도 패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신고자로 내몰며 해고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러나 전남대 측은 일부 진술이 노래방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상급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여러 차례 A씨의 손을 잡았다”며 “진술과 화면이 일부 다르지만 당황한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나 신고하면서 착오할 수 있다. 검찰도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했다. 성추행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A씨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A씨는 1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조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측이 회식 참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내린 점,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징계위원회에 실무자로 참가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1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